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71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곽상언 · 권향엽 · 김남근  
진성준 · 김 윤 · 허성무  
황정아 · 오세희 · 송재봉  
이광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제1항은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장애인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연금법」 제18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연금법」 제18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 제18조를 개정하고자 함.  
(안 제18조 제4항·제5항 신설)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